

『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
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,
그 밖의 관련 상위법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특별회계의
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현행 : 「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
및운영조례」
 - 개정 : 「구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
및 운용 조례」
- 특별회계 존속기한 신설(안 제7조)
 -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: 2023년 12월 31일까지

- 상위법령 조문위치 이동 반영(안 제2조)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
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
 -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
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
기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
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
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